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희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6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 중 기존주택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 및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내 상당수의 정비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통학로나 학교시설이 함께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규모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와 지반 붕괴, 소음, 비계 설치로 인한 위험 등 인근 학교 및 통학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철거 시 인근 학교와 통학로 등지에 안전관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계획 단계부터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인근지역 학생 및 주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철거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 및 주민의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1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제1항의 구체적 내

용에 통학로를 비롯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조문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 시 통학로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